선박 기름배출 항공감시로 적발

속초해경, 헬기 이용 육·해·공 입체적 해양오염감시 … 선저폐수 배출 등 '꼼짝 마'

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배출시키던 선박이 해양경찰 항공감시 헬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9시50경 속초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던 채낚기 어선 J호(9.77톤, 속초 선적) 선장 민 모씨(50세)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속초해경은 항공감시 중이던 해양경찰 항공기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급파해 증거 채증과 함께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에 입항한 J호 선장을 상대로 사고관련 진술을 확보하였다.

사고 어선 J호 선장은 경찰조사에서 "21일 오전 9시 속초항에서 출항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갑판청소를 위해 기관실 배전반의 해수펌프 작동스위치를 켜던 중 선저폐수 배출펌프를 잘못 작동시켜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기름과 물이 섞인 유성혼합물) 약 26ℓ 를 배출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속초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던 채낚기 어선 J호가 속초해경의 항공감시에 의해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먼 바다에서 기름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불법 배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술 드시고 선박 몰지 마세요"

속초해경, 행락철 해상 음주 행위 단속

속초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출장소 경찰력을 총동원해 거진과 속초, 주문진 등 선박운항이 많은 항포구와 음주운항이 자주 발생했던 항로에서 낚시어선과 유람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영동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24척이며, 지난해에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다.

최광호 기자

명예경찰 소년단 발대식

고성경찰서 지난 22일…37명 신규 위촉

지난 22일 고성경찰서 명예경찰 소년단 대표 장우영(사진 왼쪽, 간성초교 4학년), 최다빈(사진 오른쪽, 간성초교 4학년) 학생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경찰서 4층 금강마루에서 2011년 고성경찰서 명예경찰 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신학기를 맞아 명예경찰 소년단 조직을 재정비 하고, 소년단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고성지역 6개 초등학교 학생 37명이 명예경찰 소년단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소년단원들은 발대식 후 경찰서 유치장 및 안보현장 견학 등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향후 교내에서는 물론 교외에서 불우학생 보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등·하굣길 교통정리, 질서지키기 캠페인, 경찰현장 체험, 야외캠프, 인명구조 등을 통해 명예경찰 소년단으로서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배우게 된다.

최광호 기자

수상레저 규제 대폭 완화 전망

10월부터 20톤 미만 모터보트 · 동력요트 동력수상레저지구 등록될 듯

오는 10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는 20톤 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사진 왼쪽)와 20톤 미만 동력 요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그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지 못했던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동력요트가 등록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수상레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국민규제 완화와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2일부터 적용됐으며,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행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10월에 개정될 시행령 개정내용은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등이다. 특히 종전 선박법에 의해 등록하던 20톤 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키로 했다.

과태료의 경우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시 현행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게된다.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 위반 3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30만원에서 기간이 10일이 지난 경우 1만원부터 시작해 이후부터 1일 초과 때마다 4천원을 추가하고, 총액은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후 속초, 고성, 양양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8대이며, 속초해경에서 발급한 동력수상레저조종 면허증은 5천800건이다.

최광호 기자